

문서번호	BSKS-2-1-05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1/5

1986.03.01.제정 1997.01.10.개정 2000.03.01.개정 2003.01.01.개정 2008.03.01.개정 2014.02.01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2023.02.28.개정 소판부서 : 산학처

#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9장(규율과 상벌)의 규정에 의거, 상벌의 기준 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풍 조성과 선량한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향상하고 학생지도의 성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 재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주관) ① 이 규정에 관한 업무는 산학처에서 주관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  - ②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벌에 관한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과 지도교수 및 계열(학과)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산학처에서 심의할 수있다. 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
### 제 2 장 포 상

- 제4조(대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후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, 이사장 또는 총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수 있다.
  - 1.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  - 2. 선행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
  - 3.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
  - 4. 각종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  - 5. 기타 포상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



문서번호	BSKS-2-1-05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2/5

- 제5조(포상의 발의 및 심의) 제4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포상하고자 할 때는 산학처장은 다음 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  - 1. 공적조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  - 2. 지도교수 추천서 및 계열(학과)장 의견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
  - 3. 기타
- 제6조(포상 시기) 매학기 초 또는 졸업식 때, 그 외 필요시에 학생지도위원회에의 결정에 따라 시상한다.

#### 제 3 장 징 계

- 제7조(장계의 구분 및 기간) 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하며, 근신은 7일 이내, 유기정학은 1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(근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할 수 있다.
  - 1.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한 자
  - 2. 교직원에게 불손한 자
- 제9조(유기정학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.
  - 1.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행한 자
  - 2. 학우에게 협박, 폭행한 자 또는 사주한 자
  - 3.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자
  - 4. 교내에서 게시물을 무단 제거 오손한 자
  - 5. 학생증을 이용하여 학교의 명예를 심히 추락시킨 자
  - 6. 학생 신분을 망각하고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킨 자
- 제10조(무기정학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.
  - 1.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행한 자
  - 2. 정당한 이유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
  - 3. 학우에게 집단 폭행하거나 사주한 자
  - 4. 고의로 학교 공용물을 오손 및 파손하거나 허가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자
  - 5. 불법집회에 참가한 자
- 제11조(제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할 수 있다.
  - 1.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행한 자
  - 2. 교내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
  - 3.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



문서번호	BSKS-2-1-05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3/5

- 4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여 그의 위신을 심히 추락시킨 자
- 5. 교내에서 불온광고나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
- 6.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추락시킨 자
- 7.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
- 8. 학생회비 및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
- 9.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불법집회의 참가를 선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자
- 제12조(정계의 발의) 전조의 정계사유로 정계하고자 할 때는 산학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  - 1. 사건경위서 1부
  - 2. 본인 진술서 1부 단,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 할 수 없는 경우 지도교수의 면담결과 보고서
- 제13조(징계의 심의 및 숭인) ① 학생·지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소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- ② 산학처장은 학생·취업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고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. 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- **제14조(권리정지)**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이 특별지도를 받거나 권리 가 정지된다.
  - 1.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계열(학과)장 및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
  - 2.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
  - 3.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 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.
  - 4.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 처분할 수 있다.
- 제15조(장계해제) ① 징계해제를 요구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계열(학과)장을 경유하여 산학처장에게 제출하면 산학처장은 학생·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.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, 2023.02.28.>
  - ② 산학처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제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- 제16조(징계의 감면) 총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깊이 뉘우치거나 반성을 할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17조(통보) 징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결정 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5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4/5

제1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·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5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5/5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산학취업처』를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5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6/5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